

의안번호	2216928
의 퇴 인	김도읍의원
회 답 일	2026.3.3.
추 계 번호	26B1012

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(습지보전·이용 시설)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·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(이하 “습지보전·이용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3. <u>다리</u> , 교육·홍보 시설 및 안내·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 4. 습지생태의 관찰·체험·교육 등을 위한 생태관광 <u>시설</u>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12조(습지보전·이용시설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¹⁾에도 불구하고 습지생태

1) 제13조(행위 제한)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(이하 “습지보호지역”이라 한다)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, 「하천법」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·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,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(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 및 토지의 형질변경

의 관찰·체험·교육 등을 위한 생태관광 시설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생태관광 시설 설치·운영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행법 제12조제1항²⁾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「습지보전관리」 사업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의 훼손지 복원 및 보전·이용시설 설치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 중이며,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220억 5,100만원임
 - － 습지보호지역 내 주요 시설 설치 사례는 [참고자료] 참조

[표 1] 습지보전·이용시설 관련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회계	세부사업	내역사업	사업내용	예산액 (2026년)
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	습지보전 관리(자율)	(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) 습지보호 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·이용 시설 설치 ¹⁾	국가습지보호지역 중 훼손이 가속화 되는 지역에 대한 복원 사업 추진	21,891
	습지보전 관리(지원)	(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접수행) 습지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· 이용시설 설치		160
				계

주 1) : 국가지정 습지보호지역 70%, 시·도지정 습지보호지역 50% 지원
(보전·이용시설 설치는 '25년 신규사업부터 보조율 50%를 적용하여 훼손지 복원사업의 우선시행 유도)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2.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
 3. 흙·모래·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
 4.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
 5.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·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(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·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)
- 2) 제12조(습지보전·이용시설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·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(이하 “습지보전·이용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1.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
 2.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
 3. 나무로 만든 다리, 교육·홍보 시설 및 안내·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
 4.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- 개정안이 시행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습지생태의 관찰·체험·교육 등을 위한 생태관광 시설을 설치·운영할 경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설치될 습지생태 관찰·체험·교육 등을 위한 생태관광시설의 규모 및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규모 및 유형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습지보호지역 내 주요 시설 설치 사례

(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)

보호지역	사업 기간	‘26년 국비 (백만원)	사업내용
합계		21,891	
대암산 용늪	‘23~’26	1,625	-람사르 습지센터 건립 -인공습지 조성
순천 동천하구	‘24~’26	730	-흑두루미 서식지 확대 및 큰고니 서식지 복원
순천 동천하구	‘25~’26	2,050	철새쉼터 및 생태로드 조성
고창 운곡습지	‘24~’27	4,565	-람사르 운곡습지센터 건립
고성 마동호	‘23~’28	1,000	-습지센터 건립 -안내 및 관찰학습시설,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등
김해 화포천	‘21~’28	991	-조류 서식처 복원, 물길정비, 수질정화습지 조성 -탐방로 정비 및 오염원 제거 등
담양 하천습지	‘25~’28	280	-습지 육역화 방지 등 복원 및 탐방로 정비
광주 장록습지	‘23~’27	8,830	-습지생태관, 생태습지 및 숲복원
순천 와룡산지	‘26~’27	1,050	-습지 건조화 방지·복원, 탐방로 정비
영양 장구메기	‘26~’27	770	-습지형태 논둑 복원, 식생 복원